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 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제 3 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이상입니다.

제 6 조 재예치

- ① 이 예금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최초가입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합니다.
- ② 자동 재예치 시 신규일은 종전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 신규일로 하며,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재예치 신규일로 합니다.

제 7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간별 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일에 일시지급합니다.
-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썬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8 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제 7조 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금리로 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 3호에서 제 7호의 사유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1. 가입자 사망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퇴직
5. 사업장의 폐업
6.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10. 신탁보수 취득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금리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경과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금리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입니다. 다만, 제 1항 제 10호의 경우에는 예금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특별중도해지금리로 합니다.

1.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3개월제 약정금리
2. 경과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금리
3. 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금리
4. 경과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2년제 약정금리

제 9 조 분할해지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재예치 기간별로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해지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거래 제한

- ① 이 예금은 통장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